

<b>제2025-77호</b> <b>2025년 8월 28일(목)</b>	<b>시 보</b>  <b>여수시</b>	<b>시정지표</b>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5-394호	여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 여수시 고시	제2025-395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	17
○ 여수시 고시	제2025-396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여수 학용동 공동주택)	19
○ 여수시 고시	제2025-398호	여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20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557호	2021~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21
○ 여수시 공고	제2025-256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22
○ 여수시 공고	제2025-2572호	도로지정(변경)공고(돌산읍 신복리 144-1번지 외 1필지)	32
○ 여수시 공고	제2025-2575호	2025년 제4회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자산공원 조성사업)	34
○ 여수시 공고	제2025-2576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소라면 장청마을 위험도로 확장공사)	38
○ 여수시 공고	제2025-2577호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행정예고	40
○ 여수시 공고	제2025-2578호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45
○ 여수시 공고	제2025-2580호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46
○ 여수시 공고	제2025-2588호	도로지정(변경)공고	47

**훈 령**

○ 여수시 훈령	제432호	여수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피해 방지규정 일부개정규정	49
----------	-------	--------------------------------------	----

<b>회 람</b>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고시합니다.

2025. 8. 28.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군자동 46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사업

나. 명 칭 : 전라좌수영 동헌일원 복원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면 적: 공원 12,780㎡, 도로 1,682㎡(공원과 중복 지정)

나. 규 모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2,780	100.0	
교양시설	4,369	34.2	
공원관리시설	420	3.3	
도 로	1,682	13.1	
광 장	528	4.1	
주차장	2,782	21.8	
녹지	2,999	23.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기정: 2017. 1.26.~2025.12.31.**

**변경: 2017. 1.26.~2027.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문화유산과(☎061-659-4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기정)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권리자(갑구)			권리자(을구)		
		본번	-	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1	관문동	326	-	24	도	224	224	국(국토교통부)					
2	관문동	408	-	4	도	1	1	여수시					
3	관문동	408	-	5	도	1	1						
4	관문동	408	-	6	도	1	1						
5	관문동	408	-	7	도	4	4						
6	관문동	408	-	8	도	42	42						
7	관문동	412			대	41	41	여수시					
8	관문동	413			도	170	89	여수시					
9	관문동	415			대	43	43	최민웅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90, 804동 102호(문수동, 원앙파크맨션)				
10	관문동	416			대	180	180	여수시					
11	관문동	417	-	1	대	277	277	정채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35,	여서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84-1(여서동)		
12	관문동	1107			대	251	251	여수시					
13	관문동	1108	-	1	도	11	11	여수시					
14	관문동	1108			도	42	42	여수시					
15	관문동	1109			도	20	20	여수시					
16	관문동	1110			대	30	30	여수시					
17	관문동	1111			대	20	20	여수시					
18	관문동	1111			대	20	20	여수시					
19	관문동	1112			대	66	66	여수시					
20	관문동	1114			대	3	3	국(기획재정부)					
21	관문동	1115			대	210	210	부충배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191, 102동 908호(여서동, 현대아파트)				
22	관문동	1116			대	240	240	여수시					
23	관문동	1116	-	1	도	11	11	여수시					
24	관문동	1117			대	75	75	김진선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및 권리자(갑구)			권리자(을구)		
		본번	-	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1117				
25	관문동	1117	-	2	대	174	174	여수시					
26	관문동	296	-	18	도	877	56						
27	군자동	371	-	1	도	1,460	5	여수시					
28	군자동	405	-	2	도	8	8	국(국토교통부)					
29	군자동	406			대	294	294	여수시					
30	군자동	406	-	1	도	223	196	여수시					
31	군자동	407			대	268	268	여수시					
32	군자동	408			대	136	136	여수시					
33	군자동	409			대	115	115	여수시					
34	군자동	409	-	2	도	11	11	임영희	전라남도 여수시 군자동 401				
35	군자동	410			대	99	99	여수시					
36	군자동	411			대	213	213	여수시					
37	군자동	412			대	109	109	여수시					
38	군자동	413			대	132	132	여수시					
39	군자동	414			대	137	137	여수시					
40	군자동	415			대	160	160	여수시					
41	군자동	449			대	29	29	여수시					
42	군자동	450			대	144	144	여수시					
43	군자동	451			대	97	97	여수시					
44	군자동	452			대	104	104	여수시					
45	군자동	453			도	150	13	여수시					
46	군자동	454			대	50	50	여수시					
47	군자동	455			수	99	76	여수시					
48	군자동	456			대	53	53	여수시					
49	군자동	457			대	33	33	여수시					
50	군자동	458			대	13	13	여수시					
51	군자동	459			대	60	60	여수시					
52	군자동	460			대	252	252	여수시					
53	군자동	460	-	1	대	49	49	여수시					
54	군자동	461			대	198	198	여수시					
55	군자동	462	-	1	대	74	74	여수시					
56	군자동	462	-	4	대	76	76	여수시					
57	군자동	462	-	5	대	307	307	여수시					
58	군자동	462	-	6	대	22	22	여수시					
59	군자동	462	-	7	대	20	20	여수시					
60	군자동	464			도	208	208	여수시					
61	군자동	465			대	300	300	여수시					
62	군자동	465	-	1	대	47	47	여수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권리자(갑구)			권리자(을구)		
		본번	-	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63	군자동	466	-	1	대	144	144	여수시					
64	군자동	466	-	2	대	151	151	여수시					
65	군자동	467	-	2	대	264	264	국(기획재정부)					
66	군자동	467	-	3	대	13	13	국(기획재정부)					
67	군자동	467	-	4	도	17	17	선형재	광주광역시동구				
68	군자동	467	-	6	도	9	9	여수시					
69	군자동	469			도	23	23	여수시					
70	군자동	470			도	228	228	여수시					
71	군자동	471	-	1	도	42	22	여수시					
72	군자동	472			사	4,939	8	여수시					
73	동산동	428			대	195	10	여수시					
74	동산동	430			대	46	3	여수시					
75	동산동	431			대	16	16	조희순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759				
76	동산동	432			대	268	268	여수시					
77	동산동	433			대	36	34	국(기획재정부)					
78	동산동	434			대	43	26	여수시					
79	동산동	435			대	45	44	여수시					
80	동산동	436			대	63	28	여수시					
81	동산동	437			대	93	84	여수시					
82	동산동	438			대	89	89	여수시					
83	동산동	439			대	53	53	여수시					
84	동산동	440			대	66	66	여수시					
85	동산동	441			대	20	20	여수시					
86	동산동	442			대	63	63	여수시					
87	동산동	443			대	205	205	여수시					
88	동산동	444			대	99	99	여수시					
89	동산동	445			대	165	165	여수시					
90	동산동	446			대	73	73	여수시					
91	동산동	447			대	93	93	여수시					
92	동산동	448			대	112	112	여수시					
93	동산동	449			대	94	94	여수시					
94	동산동	455			대	76	76	여수시					
95	동산동	457			대	154	154	여수시					
96	동산동	458	-	1	대	14	14	여수시					
97	동산동	459	-	1	대	36	36	여수시					
98	동산동	460			대	75	75	여수시					
99	동산동	460	-	1	도	114	2	여수시					
100	동산동	461	-	1	대	208	208	여수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권리자(갑구)			권리자(을구)		
		본번	-	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101	동산동	462			대	86	86	여수시					
102	동산동	463	-	1	대	176	176	여수시					
103	동산동	463	-	2	대	152	152	여수시					
104	동산동	464	-	2	대	31	31	여수시					
105	동산동	465	-	1	대	69	69	심정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54번길 51-16, 307동 1001호				
106	동산동	467			대	60	60	여수시					
107	동산동	468			대	60	60	여수시					
108	동산동	468	-	1	도	6	3	여수시					
109	동산동	469			대	46	46	여수시					
110	동산동	470			도	3	3	국(국토교통부)					
111	동산동	471			대	192	192	여수시					
112	동산동	475			대	125	125	김준수	전라남도 여수시 동산동 475				
113	동산동	476	-	1	대	195	195	여수시					
114	동산동	477			도	1,094	1,040	여수시					
115	동산동	479	-	1	차	246	246	여수시					
116	동산동	479	-	4	차	14	14	여수시					
117	동산동	480			대	195	195	여수시					
118	동산동	481			대	147	147	여수시					
119	동산동	481	-	1	차	101	101	여수시					
120	동산동	482			대	119	119	여수시					
121	동산동	483			대	136	136	여수시					
122	동산동	485			도	192	192	여수시					
123	동산동	485	-	2	도	3	3	여수시					
124	동산동	486			수	69	50	여수시					

○ 토지조서(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권리자(갑구)			권리자(을구)			
		본번	-	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비고	성명	주소	비고	
기정:소계(124필지) 변경:소계(60필지)						21,448	12,780							
1	관문동	326	-	24	도	224	224	국(국토교통부)						변경없음
2	관문동	412			대	41	41	여수시						변경없음
3	관문동	413			도	170	89	여수시						변경없음
4	관문동	415			대	43	43	최민웅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90, 804동 102호(문수동, 원앙파크맨션)					기정
	"	"			"	"	"	여수시						변경
5	관문동	416			대	182	180	여수시						기정
	"	"			"	1,489	1,489	여수시						변경
6	관문동	417	-	1	대	277	277	정채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35, 101동 106호(신월동, 대주아파트)	여서 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84-1(여서동)			기정
	"	"	"	"	"	"	"	여수시						변경(합병 지번 삭제)
7	관문동	1108	-	1	도	11	11	여수시						변경없음
8	관문동	1108			도	42	42	여수시						변경없음
9	관문동	1109			도	20	20	여수시						변경없음
10	관문동	1110			대	30	30	여수시						기정
	"	"			"	146	146	여수시						변경
11	관문동	1114			대	3	3	국(기획재정부)						변경없음
12	관문동	1115			대	210	210	부충배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191, 102동 908호(여서동, 현대아파트)					기정
	"	"			"	"	"	여수시						변경(합병 지번 삭제)
13	관문동	1116	-	1	도	11	11	여수시						변경없음
14	관문동	1117			대	75	75	김진선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1117					기정
	"	"			"	"	"	여수시						변경(합병 지번 삭제)
15	군자동	296			도	877	56	국(국토교통부)						변경없음
16	군자동	371	-	1	도	1,460	5	여수시						변경없음
17	군자동	405	-	2	도	8	8	국(국토교통부)						변경없음
18	군자동	406			대	294	294	여수시						기정
	"	"			"	3,759	3,759	"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권리자(갑구)			권리자(을구)		
		본번	-	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비고	성명	주소	비고
19	군자동	406	-	1	도	223	196	여수시					변경없음
20	군자동	409	-	2	도	11	11	임영희	전라남도 여수시 군자동 401				기정
	"	"	"	"	"	"	"	여수시					변경 (합병 지번 삭제)
21	군자동	453			도	150	13	여수시					변경없음
22	군자동	455			수	99	76	여수시					변경없음
23	군자동	460	-	1	대	49	49	여수시					변경없음
24	군자동	462	-	6	대	22	22	여수시					변경없음
25	군자동	462	-	7	대	20	20	여수시					변경없음
26	군자동	464			도	208	208	여수시					변경없음
27	군자동	465	-	1	대	47	47	여수시					변경없음
28	군자동	467	-	2	대	264	264	국(기획재정부)					변경없음
29	군자동	467	-	3	대	13	13	국(기획재정부)					변경없음
30	군자동	467	-	4	도	17	17	선형재	광주광역시동구 계림동 489-18				기정
	"	"	"	"	"	"	"	여수시					변경
31	군자동	467	-	6	도	9	9	여수시					변경없음
32	군자동	469			도	23	23	여수시					변경없음
33	군자동	470			도	228	228	여수시					변경없음
34	군자동	471	-	1	도	42	22	여수시					변경없음
35	군자동	472			사	4,939	8	여수시					변경없음
36	동산동	428			대	195	10	여수시					변경없음
37	동산동	430			대	46	3	여수시					변경없음
38	동산동	431			대	16	16	조희순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759				기정
	"	"			"	1,834	1,834	여수시					변경
39	동산동	433			대	36	34	국(기획재정부)					변경없음
40	동산동	443			대	205	205	여수시					변경없음
41	동산동	444			대	99	99	여수시					변경없음
42	동산동	449			대	94	94	여수시					변경없음
43	동산동	458	-	1	대	14	14	여수시					변경없음
44	동산동	459	-	1	대	36	36	여수시					변경없음
45	동산동	460			대	75	75	여수시					기정
	"	"			"	1,384	1,384						변경
46	동산동	460	-	1	도	114	2	여수시					변경없음
47	동산동	464	-	2	대	31	31	여수시					변경없음
48	동산동	465	-	1	대	69	69	심정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54번길 51-16, 307동 1001호 (매포동, 센트럴하이츠아파트)				기정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및 권리자(갑구)			권리자(을구)		
		본번	-	부번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비고	성명	주소	비고
	"	"	"	"	"	"	"	여수시					변경 (합병 지번삭제)
49	동산 동	468			대	60	60	여수시					변경없음
50	동산 동	468	-	1	도	6	3	여수시					변경없음
51	동산 동	470			도	3	3	국(국토교 통부)					변경없음
52	동산 동	475			대	125	125	김준수	진라남도 여수시 동산동 475				기정
	"	"			"	"	"	여수시					변경 (합병 지번 삭제)
53	동산 동	477			도	1,094	1,040	여수시					변경없음
54	동산 동	479	-	1	차	246	246	여수시					기정
	"	"	"	"	"	542	542	"					변경
55	동산 동	479	-	4	차	14	14	여수시					변경없음
56	동산 동	485			도	192	192	여수시					변경없음
57	동산 동	485	-	1	도	3	-	국(국토교 통부)					변경없음
58	동산 동	485	-	2	도	3	3	여수시					변경없음
59	동산 동	486			수	69	50	여수시					변경없음
60	동산 동	487			대	36	-	여수시					변경없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 및 격	조규	수량 (㎡)	건축물면적 (㎡)		소유자 및 권리자(갑구)			권리자(을구)		
		본번	부번						건축면적 (㎡)	연면적 (㎡)	성명	주소	비고	성명	주소	비고
소계		기정(62필지)						5,231.22	8,498.77							
		변경(63필지)						4								
1	관문동	408	- 8	대				555.15	1,985.02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2	관문동	413			도			39.67	72.73	유국중	경기도 포천시 청산면 세전리 530				기정	
	"	"			"					여수시					변경 (건물철거)	
3	관문동	415			대	1층 점포	목조	40	38.41	74.50	최민웅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90, 804동 102호(문수동, 원앙파크맨션)				기정
						2층 주택	목조	36	25.95	25.95	김남기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414				
						벽면 간판 돌출 간판		1식								
	"	"				"					여수시				변경 (건물철거)	
4	관문동	417	- 1	대	1층 목욕탕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202.08	202.08	250.17	정채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35, 101동 106호 (신월동, 대주아파트)	여서 새마을 금고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84-1 (여서동)	기정	
					2층 주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169.1								
					3층 주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155.9								
					목욕탕 매표소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1.5x5)		7.5								
					지하 보일러실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5x3)		15								
					지하 물탱크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10x4.3)		43								
					굴뚝	적벽돌 (1.5x1.5)x7		15.75								
					3층 난간	철제 (5.5x4)		22								
					온수통			4식								
					1층 창고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1.5x5)		7.5								
				옥상 창고	브릭 슬레이		8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물의종류	구및격	조규	수량 (㎡)	건축물면적 (㎡)		소유자 및 권리자(갑구)			권리자(을구)		비고		
		본번	부번						건축 면적 (㎡)	연면 적 (㎡)	성명	주소	비고	성명	주소			
							트(4x2)											
					철제 그물 울타리		4x2	1식										
					벽면 간판			1식										
					바닥 포장		1.5x1.5+ 1x1+4x4	19.2 5										
					빨래 건조대			2식										
					스카이 라이프			1식										
					철제 계단		12단	1식										
					가추		복제, 경질염 화비닐 (1.8x10. 5)	18.9										
					화단1		4x2	8										
					화단2		1.5x1.5	2.25										
					등나무			1주										
					단풍 나무			1주										
					동백 나무			3주										
					중려 나무			1주										
					살구 나무			1주										
					은행 나무			1주										
					은목서			2주										
					청목			1주										
	"	"		"								여수					변경 (건물철 거)	
5	관동	문	110 7		대				78.30	89.64		여수						변경없 음 (건물철 거)
6	관동	문	111 2		대				41.02	41.02		여수						변경없 음 (건물철 거)
7	관동	문	111 3		대				22.51	22.51		여수						변경없 음 (건물철 거)
8	관동	문	111 5		대	주택	벽슬레이 블럭 슬래브	돌 레이 블럭 일부 4	90.9 4	69.15	69.15	부 중 배	전라남도 여수 시 여문2로 191, 102동 908호 (여서동, 현대 아파트)					기정
						창고	벽슬레이 블럭	돌 슬레이 블럭	5.27									
						화장 실	벽슬레이 블럭	돌 슬레이 블럭	3.24									
						정화 조			1식									
						빨래 건조			1식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물의 종류	구 및 격	조규	수량 (㎡)	건축물면적 (㎡)		소유자 및 권리자(갑구)			권리자(을구)					
		본번	-						부번	건축면적 (㎡)	연면적 (㎡)	성명	주소	비고	성명	주소	비고		
					대														
					계단 (난간 포함)	13단		1식											
					담장1	4.5x2.2 + 2.1x1.8		1식											
					담장2	18.6x2.2+2.7x2.3		1식											
					담장3	13x1.7		1식											
					바닥 포장1	3.5x5.6		19.6											
					바닥 포장2	11x8		88											
					장독 받침대	3.1x1		3.1											
					대문	철제		1식											
					입구 계단	5단		1식											
					수도 시설			1식											
				차양	6x2.1		12.6												
	"	"		"							여수시						변경 (건물철거)		
9	관문동	111-6			대				140.22	140.22	여수시							변경 없음 (건물철거)	
10	관문동	111-7			대	주택	벽돌 슬래브	78.04	73.65	73.65	김진식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1117							
						정화조													
						창고	목조 (2.0x1.0)			2									
						보일러실	1.5x1			1.5									
						철제 온실1	2.6x1.8			4.68									
						철제 온실2	1.2x1.2			1.44									
						물탱크	FRP			1식									
						빨래 건조대				1식									
						스카이 라이프				1식									기정
						에어컨 실외기				1식									
						옥상 창고	1.2x1.2			1.44									
						철제 계단	7단			1식									
						담장1	L=3.5, H=1.8			1식									
						담장2	L=13, H=2			1식									
					바닥 포장	13x1.5			19.5										
					대문	철제 (기둥포함)			1식										
					수도 시설				1식										
	"	"		"							여수시						변경 (건물철거)		
11	관문동	111-2			대				86.94	86.94	여수시							변경 없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물의종류	건구및적	조규	수량(m <sup>2</sup> )	건축물면적(m <sup>2</sup> )		소유자 및 권리자(갑구)			권리자(을구)		
		본번	부번						건축면적(m <sup>2</sup> )	연면적(m <sup>2</sup> )	성명	주소	비고	성명	주소	비고
	동	7									시					음 (건물철거)
12	군동자	406		대				162.50	162.50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100.00	100.00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13	군동자	407		대				170.21	210.40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14	군동자	408		대				58.01	58.01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15	군동자	409		대				66.96	119.73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16	군동자	410		대				40.00	40.00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17	군동자	411		대				85.23	155.79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18	군동자	412		대				50.91	84.79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19	군동자	413		대				75.15	133.53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20	군동자	414		대				56.23	56.23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21	군동자	415		대	주택	시멘트벽돌조슬래브,화강돌붙임	80.05	78.57	78.57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22	군동자	450		대				77.05	136.26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23	군동자	451		대				36.36	72.72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24	군동자	452		대				51.00	84.58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25	군동자	454		대				39.39	78.78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26	군동자	456		대				27.11	27.11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27	군동자	459		대				40.90	40.90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물의종류	건구및격	조규	수량(m <sup>2</sup> )	건축물면적(m <sup>2</sup> )		소유자 및 권리자(갑구)			권리자(을구)		
		본번	-	부번						건축면적(m <sup>2</sup> )	연면적(m <sup>2</sup> )	성명	주소	비고	성명	주소	비고
																	가)
28	군동	자	460			대			130.50	273.96	여시	수					변경없음 (건물철거)
29	군동	자	461			대			91.35	156.24	여시	수					변경없음 (건물철거)
30	군동	자	462	-	1	대			50.94	99.73	여시	수					변경없음 (건물철거)
31	군동	자	462	-	4	대			51.37	99.24	여시	수					변경없음 (건물철거)
32	군동	자	462	-	5	대			98.74	98.74	여시	수					변경없음 (건물철거)
33	군동	자	465			대			128.61	128.61	여시	수					변경없음 (건물철거)
34	군동	자	466	-	1	대			53.55	53.55	여시	수					변경없음 (건물철거)
									102.82	372.66	여시	수					변경없음 (건물철거)
35	동동	산	430			대			22.15	22.15	여시	수					변경없음 (건물철거)
36	동동	산	432			대			109.30	109.30	여시	수					변경없음 (건물철거)
37	동동	산	435			대			27.77	27.77	여시	수					변경없음 (건물철거)
38	동동	산	436			대			28.83	28.73	여시	수					변경없음 (건물철거)
39	동동	산	437			대			34.38	34.38	여시	수					변경없음 (건물철거)
40	동동	산	439			대			22.29	41.535	여시	수					변경없음 (건물철거)
41	동동	산	440			대			33.06	33.06	여시	수					변경없음 (건물철거)
42	동동	산	442			대			36.85	59.95	여시	수					변경없음 (건물철거)
43	동동	산	443			대			64.20	64.20	여시	수					변경없음 (건물철거)
44	동동	산	444								여시	수					변경없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물의종류	건구 및 조규	수량 (㎡)	건축물면적 (㎡)		소유자 및 권리자(갑구)			권리자(을구)				
		본번	부번					건축면적 (㎡)	연면적 (㎡)	성명	주소	비고	성명	주소	비고		
																(건물철거)	
45	동산동	445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46	동산동	446		대				40.32	110.88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47	동산동	447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48	동산동	448 / 457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49	동산동	455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50	동산동	461	1	대				111.90	271.65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51	동산동	462		대				54.80	108.40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52	동산동	463	1	대				84.10	144.14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53	동산동	463	2	대				58.24	103.09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54	동산동	467		대				43.38	84.74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55	동산동	469		대				61.76	61.76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56	동산동	471		대				49.17 / 90.30	49.17 / 90.30	여수시						변경없음 (건물철거)	
57	동산동	475		대	1층점포및주택	벽돌슬래브	92.01			김준수	전라남도 여수시 동산동 475						
					1층화장실 (계단 7단포함)	벽돌슬래브	3										
					1층부엌및화장실		3.2										기정
					2층주택	벽돌슬래브	73.78										
					1층외부가추	벽돌강판 (2.0x4)	8										
					2층화장실	벽돌슬래브 (1.6x1.4)	2.24										
					옥상난간	알루미늄	1석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물의종류	건축물구및적	조규	수량(m <sup>2</sup> )	건축물면적(m <sup>2</sup> )		소유자 및 권리자(갑구)			권리자(을구)			
		본번	부번						건축면적(m <sup>2</sup> )	연면적(m <sup>2</sup> )	성명	주소	비고	성명	주소	비고	
					정화조			1식									
					2층 세탁실	목근 (1.2x1.2)		1.44									
					2층 가추	알루미늄 (3x2.8)		1식									
					옥상 창고	합판, 목조 (5x2.5)		12.5									
					1층대문 (계단포함)			1식									
					1층바닥 포장	6.5x1.0+5.3x1.1x1.1		23.9									
					1층담장	블럭 (6.5x1.5)		1식									
					물탱크			3식									
					빨래 건조대			1식									
					철제 계단		4단	1식									
					옥상 계단		11단	1식									
					수도 시설			1식									
					대문			1식									
					1층 입구 화단	2.0x0.5		1식									
					1층 화단	블럭 (5.3x0.7)		3.71									
					동백 나무			1주									
					종려 나무			1주									
											여수시						변경 (건물철거)
58	동산동	479	- 1	차					118.25	118.25	여수시						변경 없음 (건물철거)
									26.45	26.45	여수시						
59	동산동	480		대					77.00	77.00	여수시						변경 없음 (건물철거)
60	동산동	481		대					66.60	193.41	여수시						변경 없음 (건물철거)
61	동산동	482		대					59.51	59.51	여수시						변경 없음 (건물철거)
62	동산동	483		대					56.20	56.20	여수시						변경 없음 (건물철거)
	관동	1110		대							조정자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로 88					기정
63					1층점 및 택	철근 콘크리트 벽돌 합	근리슬 2	21.3									변경 (건물철거)
					2층 주택	벽돌 석		11.7									
					반지			9.62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물의종류	건구 및 조규	수량 (㎡)	건축물면적 (㎡)		소유자 및 권리자(갑구)			권리자(을구)		
		본번	-	부번					건축면적 (㎡)	연면적 (㎡)	성명	주소	비고	성명	주소	비고
						주택										
						빨래조		1식								
						면관		1식								
						영업상	진남집	1식								

※ 전라좌수영 동헌일원 복원사업 여수시 소유의 지장물 철거완료

## 여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8. 28.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둔덕동 산96-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 나. 명 칭: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이전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399,217m<sup>2</sup>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전남대학교총장
  - 나.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991. 6.18.~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전남대학교 행정지원과(☎061-659-6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없음)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m <sup>2</sup>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 치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둔덕동	369-1	전	285	285	교육부				
2	둔덕동	369-2	전	1,530	87	의령읍씨 응계공파종중	전남 여수시 자동 310			
3	둔덕동	375-1	답	4,368	4,368	교육부				
4	둔덕동	394-6	임	117	117	교육부				
5	둔덕동	396	답	370	370	교육부				
6	둔덕동	396-1	답	873	873	교육부				
7	둔덕동	397	답	5,422	5,422	교육부				
8	둔덕동	410-5	전	700	700	교육부				
9	둔덕동	411-1	답	3,234	3,234	교육부				
10	둔덕동	422-3	전	8	8	교육부				
11	둔덕동	422-4	전	281	281	교육부				
12	둔덕동	424	답	522	522	교육부				
13	둔덕동	424-2	임	1,041	1,041	교육부				
14	둔덕동	424-3	전	1,418	1,418	교육부				
15	둔덕동	425	임	116	116	교육부				
16	둔덕동	617-29	구거	4,925	275	건설부				
17	둔덕동	산91	임	5,752	5,752	교육부				
18	둔덕동	산96-1	임	211,698	211,698	교육부				
19	둔덕동	산96-2	임	58	58	교육부				
20	둔덕동	산100	임	397	397	교육부				
21	둔덕동	산104-1	임	8,858	8,858	교육부				
22	둔덕동	산108-4	임	1,119	1,119	임태방	여수시 미평동 780-1			지분 : 748/1,686
						교육부			지분 : 938/1,686	
23	둔덕동	산109-4	임	1,281	1,281	교육부				
24	둔덕동	산111	임	962	962	곽금지	여수시 둔덕동 209			
25	둔덕동	산113-16	임	86	86	교육부				
26	둔덕동	산113-17	임	131	131	여수시				
27	미평동	708-5	답	4	4	교육부				
28	미평동	900-1	답	4,927	4,927	교육부				
29	미평동	900-4	답	530	530	교육부				
30	미평동	901-2	답	2,240	2,240	교육부				
31	미평동	901-3	전	298	298	교육부				
32	미평동	901-4	답	731	731	김근진	충남 보령시 봉산1길 88,			지분 : 72 /843
						교육부			지분 : 771 / 843	
33	미평동	902-1	답	198	198	교육부				
34	미평동	904	답	274	274	교육부				
35	미평동	905-1	전	2,311	2,311	교육부				
36	미평동	905-2	답	1,511	1,511	교육부				
37	미평동	905-3	전	1,534	1,534	교육부				
38	미평동	905-4	전	810	810	교육부				
39	미평동	산103-1	임	131,060	130,919	교육부				
40	미평동	산110	묘	3,471	3,471	교육부				
40필지				405,451	399,217					

여수시 고시 제2025-395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허가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허가기간	허가받은 자		목 적	변경사항(면적)	
			주 소	성 명		변경 전	변경 후
2017-015 (2025. 8. 27.)	남면 안도리 888-4번지 지선 공유수면	'22.2.21. ~ '27.2.20.	여수시 남면 안도해변길49	손민오	어선 접안 시설 설치(바지선)	146㎡	31.9㎡

2025. 8. 27.

여 수 시 장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여수시 학용동 산73-3번지 외 4필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8. 27.

###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여수시 학용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우평건설 주식회사 대표 권기욱
3. 사업위치 : 여수시 학용동 산73-3 외 4필지
4. 사업개요
  - 가. 대지면적 : 9,282.20㎡
  - 나. 건축면적 : 1,932.3765㎡
  - 다. 연 면 적 : 26,746.8339㎡
  - 라. 규 모 : 지하 2층/지상 19층, 공동주택 3개동
5. 사업기간 : 2021. 6. 30. ~ 2025. 8. 30.
6.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7.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659-4098)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공 시 송 달 공 고

2021~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된 토지의 면적 증가분에 대한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체납된 조정금 징수를 위한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한 불임 대상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60명 (금봉 20, 둔전 7, 대포 1, 덕양 32)
2. 공고기간: 2025. 8. 26. ~ 2025. 9. 9.(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돌산읍·소라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2021~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5.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32, 3325, 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공시송달 조서 1부.

2025. 8. 26.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5-2569호]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5년 8월 26일

여수시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2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흥경화

다. 시 공 자 : 흥경화(자기공사, 현장대리인 김육손)

라. 감 리 자 : 씨에이건축사사무소 박창권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2번지

2) 대지면적 : 1,710㎡

3) 연 면 적 : 199.96㎡

4) 층 / 동 : 지상1층/1동

5) 용 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6) 공사기간 : 2025. 8. 1.~ 2025. 8. 31.

7) 순공사비 : 137,500,000원

8) 안전점검 비용 : 3,000,000원(VAT 별도)

바. 건축허가일 : 2024. 5. 17.

###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 가. 점검종류

-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2회)

####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148호

#### 나. 결정방법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8. 27.(수) 10:00 ~ 9. 1.(월) 11: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5. 9. 3.(수) 이전 개별 통보(우선순위 1개 업체만 통보)

\* 우선순위 업체(1,2순위)의 접수가 동일 할 경우 2개 업체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개별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5. 9. 3.(수) ~ 9. 9.(화)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

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별첨 1]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9. 10.(수) 10:00~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과(☎061-659-41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2. 공정표 1부(별첨). 끝.

[서식1]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li> <li>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li> <li>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li> <li>4. 서약서 1부 [서식4]</li> </ol>	수수료  없음
----------------------	---	---------------

[서식2]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0	소 계	5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25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15	
3. 점검·진단 평가결과	5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5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b>총 계</b>	<b>100</b>	<b>평점 : 평가점수 × 10%</b>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 2. 수행가격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안가격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70	80	90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65	75	85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60	70	80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55	65	75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50	60	70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45	55	65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40	50	60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35	45	55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30	40	50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25	35	45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20	30	40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15	25	35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10	20	30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준	심사방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계	100점	

[서식3]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업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도로 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144-3번지 외 3필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변경)합니다.

2025. 8. 26.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144-1, 144-2번지
2. 도로면적 : 211㎡
3. 도로길이 : 49.50m
4. 도 로 폭 : 4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계			9,170	218	
변경	계			9,256	211	
당초	돌산읍 신복리	144-1	전	6,433	36	
		144-2		2,737	182	
변경	돌산읍 신복리	144-1	전	6,433	24	
		144-2		2,823	187	

※ 당초 도로 지정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3-1373호 (2023. 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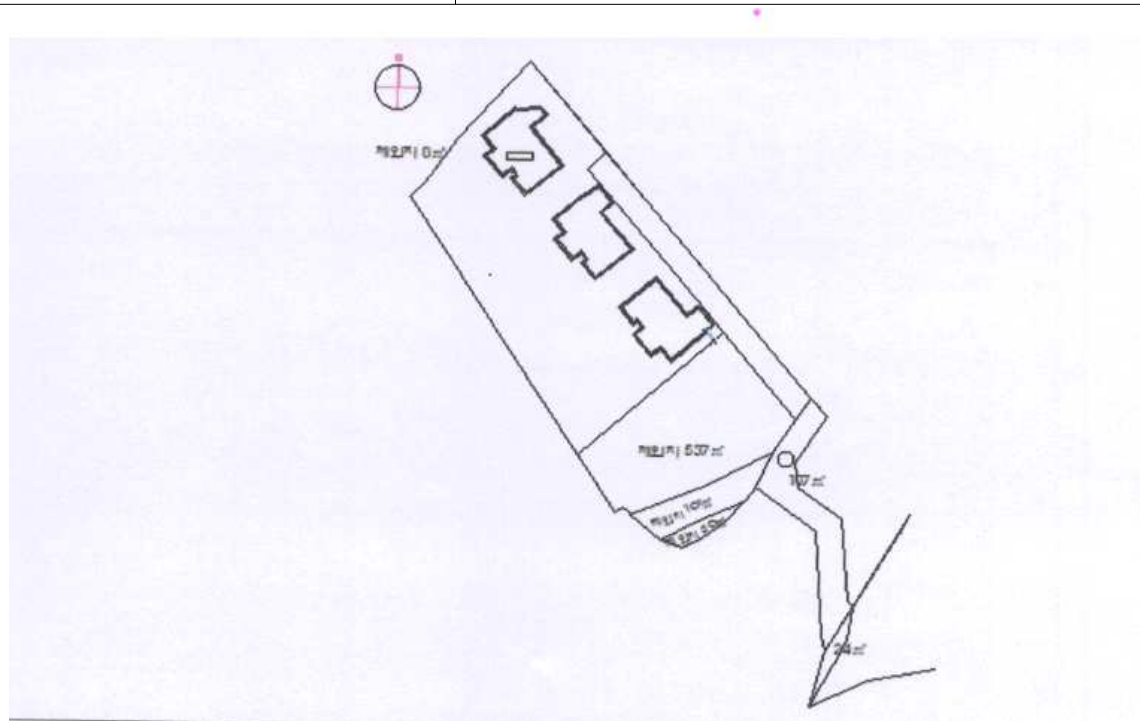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위 치 도



현 황 도



##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자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9. 10. (수)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2025. 8. 26.

### 여수시장

1.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명칭 : 자산공원 조성사업
3. 수용재결 신청대상
  -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종화동		6	도로	17	17	등) 여수시 동정 **** 실) 전라남도 여수시 동정****	김*근	해 당	없 음		
종화동		24	전	152	152	등) - 실) -	미등기	-	김*봉	토 지 대장상 소유자	
종화동		29	전	502	502	등) 여수시 동정 *** 실) 전라남도 여수시 동정 ***	최*균	해 당	없 음		
종화동		39	전	79	79	등) 여수시 동정 *** 실) 전라남도 여수시 동정 ***	최*균	해 당	없 음		
종화동		79	대	33	33	등) 여수시 동정 *** 실)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 ***동 ****호 (학동,신동아파밀리에)	김*욱	해 당	없 음		

종화동	104	전	1098	1,098 *3/332	등) 여수시 종화동 *** 실) 전남 여수시 종화 동 ***	박*곤	해 당	없 음		
종화동	117	전	271	271	등) - 실) -	미등기	-	최*동	토 지 대장상 소유자	
종화동	118	도로	10	10	등) - 실) -	미등기	-	최*동	토 지 대장상 소유자	
종화동	129	전	364	364	등) 여수시 동정 *** 실) 전남 여수시 동정 ***	이*광	해 당	없 음		
종화동	164	전	112	112	등) 여수시 동정 ** 실) 전라남도 여수시 동정 **	박*두	해 당	없 음		
종화동	186	묘지	129	129	등) - 실) -	미등기	-	정*양	토 지 대장상 소유자	
종화동	276-1 (276)	임	708	708	등)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_*_*_*동 ***호(주공 아파트) 실)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_*_*_*동 ***호(주 공아파트)	김*우	해 당	없 음		
종화동	647	임	579	579 *1/2	등) 서울특별시 중랑 구 동일로 ***,****호 (목동, 로프트원 태릉 입구역) 실) 서울특별시 중랑 구 동일로 ***,****호 (목동, 로프트원 태릉 입구역)	강*선	해 당	없 음		
종화동	647	임	579	579 *1/2	등) 서울특별시 노원 구 한글비석로 ***, ***동 ****호(상계동, 보람아파트) 실) 서울특별시 노원 구 한글비석로 ***, ***동 ****호(상계동, 보람아파트)	강*현	해 당	없 음		
종화동	675-1 (675)	전	1,839	1,839	등)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길 *(서교동) 실)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_*_* *층(오치 동)	임*성	해 당	없 음		
종화동	676	전	456	456	등)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길 *(서교동) 실)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_*_* *층(오 치동)	임*성	해 당	없 음		
종화동	709-1 (709)	대	1	1	등) 서울특별시 성북 구 송인로*길 **_*_*_* 동 ****호(길음동,동부 센트레빌아파트) 실) 서울특별시 성북 구 송인로*길 **_*_*_* 동 ****호(길음동,동부센 트레빌아파트)	이*훈	해 당	없 음		
수정동	82	도로	20	20	등) 서울 서대문구 중 림동 **_*_*_* 실) 경기도 안산시 단	조*기	해 당	없 음		

						원구 초지*로 * , **** 등 ***호 (초지동,그린 빌아파트)					
수정동	91	도로	109	109 *2/117	등)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번길 ***(용봉 동,용봉동주민센터) 실)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번길 ***(용봉 동주민센터)	차*철	해 당	없 음			
수정동	92-3 (92-1)	임야	1599	1,599 *2/117	등)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번길 ***(용봉 동,용봉동주민센터) 실)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번길 ***(용봉 동주민센터)	차*철	해 당	없 음			
수정동	112-1 (112)	도로	29	29	등) - 실) -	미등기	-	김*찬	토 지 대장상 소유자		
수정동	115-1	전	245	245	등) 여수시 종화동 *** 실)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원당*길 **.**	박*순	해 당	없 음			
수정동	115-3 (115-2)	대	17	17	등) 여수시 종화동 *** 실)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원당*길 **.**	박*순	해 당	없 음			
합계	22필지			5,602.11㎡		19명		4명			

○ 물건

물건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화동 647	울타리	그물망+목재 및파이프	1식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 , ** 동 ****호(상계동, 보 람아파트)	강*현	해 당	없 음	
	감나무	R18 H3	1주					
종화동 675-1	농막	목조장판	1식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 , *층(오치동)	임*성	해 당	없 음	
	복숭야무	R15 H2.5	1주					
	감나무	R15 H2.5	5주					
	동백나무	R15 H2.5	1주					
	매실나무	R15 H2.5	1주					
종화동 676	울타리	그물망+목재 파이프	1식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 *층(오치동)	임*성	해 당	없 음	
	울타리	그물망파이프	1식					
합 계	3건				2명			

4. 열람장소 : 여수시청 게시관 및 홈페이지, 공원과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5. 8. 27. ~ 2025. 9. 10.(15일간)

6. 의견서 제출처 : 여수시 공원과 녹지관리팀

- 주소 : (우)59683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시전동), 망마경기장 1층 공원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공원과(☎ 061-659-46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소라면 장척마을 위험도로 확장공사(1공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9. 10.(수)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2025. 8. 27.

### 여수시장 (인)

1.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 명칭 : 소라면 장척마을 위험도로 확장공사(1공구)

3. 수용재결 신청대상

- 토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면)	리	지번 (당초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종류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1127-4 (1127-4)	임	99	99	등) 여수시 웅천남8로 23, 209동 2403호 (웅천동, 포레나웅천2단지)	김순지	여수시 학동1길 19(학동)	여천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1127-5 (1127-1)	임	1,237	64	등) 여수시 웅천남8로 23, 209동 2403호 (웅천동, 포레나웅천2단지)	김순지	여수시 학동1길 19(학동)	여천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1127-6 (1127-1)	임	1,237	19	등) 여수시 웅천남8로 23, 209동 2403호(웅천동, 포레나웅천 2단지)	김순지	여수시 학동1길 19(학동)	여천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합계		3필지			182㎡		1명		1명		

4. 열람장소 : 여수시청 게시판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5. 8. 27. ~ 2025. 9. 10.(15일간)

6. 의견서 제출처 : 여수시청 도로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로과(☎ 061-659-4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행정예고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8일

# 여 수 시 장

### 1. 행정예고 내용: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 가.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내용 및 단속시행일자

연번	위 치	구 간	내 용	시행일자
1	학동 134	편측(5m), 편측(7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황색복선) →	2025. 9. 18.
2	웅천6길 57(이순신도서관)	편측(60m)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황색실선)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 나. 세부장소 : 【붙임 1】 참고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공고)기간 : 2025. 8. 28.(목) ~ 9. 17.(수), 20일간

4. 예고(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간: 2025. 8. 28.(목) ~ 9. 17.(수) 18:00, 20일간

다. 제출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라. 제출양식: **【붙임 2】** 참고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 교통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학동) (우)59673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팩 스: 061-659-5864                   ※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바.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061-659-416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예정 구간 위치도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 학동 134 황색복선 → 황색실선 변경 (편측 L=5m, 13m)



○ 응천6길 57(어르신문화체육센터) (편측 L=60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 공 시 송 달 공 고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된 토지의 면적 증가분에 대한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체납된 조정금 징수를 위한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한 불임 대상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돌산 우두지구 24명
2. 공고기간: 2025. 8. 27. ~ 2025. 9. 10.(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돌산읍 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5.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31, 34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불임 : 공시송달 조서 1부.

2025. 8. 27.

여 수 시 장

#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의 실태조사 등)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대상업체

업 체 (대표자)	소재지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
(주)영광토건 (김*백, 박*일)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6길 37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2025. 6. 5.
원테크주식회사 (박*현)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249-19, 2층		
월드엔지니어링 (고*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영터길 35-30		
동오건설 (김*오)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로 39, 2층		

2. 공고기간 : 2025. 8. 27. ~ 2025. 9. 10.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4. 공고내용

- 가.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하여 관련 공문을 수령하여 **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를 2025. 9. 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은 여수시청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문의바랍니다.

2025. 8. 27.

여수시장

## 도로 지정 (변경)공고

여수시 묘도동 1156-9번지 외 3필지 상 건축허가 변경신청 승인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변경)합니다.

1. 위 치 : 여수시 묘도동 1213-2번지
2. 도로면적 : 215㎡
3. 도로길이 : 현황도 참조
4. 도로 폭 : 현황도 참조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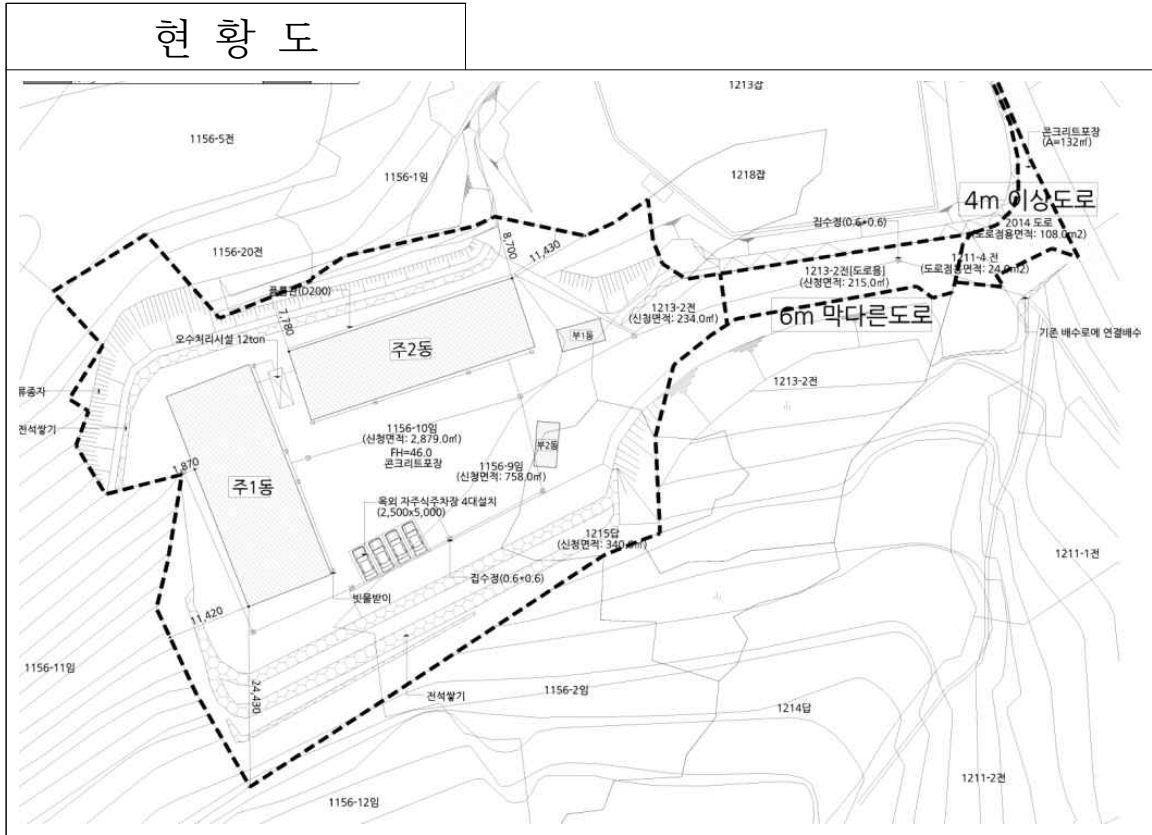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계			1,324	192	
	묘도동	1213-2	전	1,324	192	
변경	계			1,324	215	
	묘도동	1213-2	전	1,324	215	

※ 당초 도로지정공고: 여수시 공고 제2023-1722호(2023.6.5.)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2025. 8. 28.

여 수 시 장



여수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5년 8월 27일

여수시장 *최영기*



여수시 훈령 제432호

붙임 여수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일부개정 규정 1부. 끝.

## 여수시 훈령 제432호

### 여수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 제정) 2017.12.07 훈령 제348호

(전부개정) 2021.12.15 훈령 제382호

(일부개정) 2024.09.11 훈령 제41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여수시장, 구성원과 시 소속 기관의 통제 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 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스톱킹행위 및 스톱킹범죄를 말한다.
4.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

여수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5년 8월 27일

여수시장

조진기



여수시 훈령 제432호

붙임 여수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일부개정 규정 1부. 끝.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예방 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

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여성폭력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제7조(소속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2.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3.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② 행위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시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다만, 행위자가 기관장이나 임원급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 등이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시로 조사를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 및 시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기준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5급이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절차 등을 교육하고 실시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및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업무를 처리하고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업무담당부서”라 한다)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고충상담창구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으로 지정하며, 여성과 남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등 예방업무 담당자

2. 인사 및 복무 담당자

3. 공직감찰 업무 담당자 <신설 2024. 9.11.>

4. 삭제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자의 고충접수 및 상담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자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4. 여수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및 감사관 확인 조사 요청

⑤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비치해야 한다.

제10조(사이버신고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사이버신고창구의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고충처리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관련 전문교육을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9조제4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10조에 따른 사이버 신고창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 등은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이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13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시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시장과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4조(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제10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상담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조사를 완료하기 힘든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리 판단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으며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의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 조사과정에서 업무담당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⑨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

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⑩ 고충상담원은 조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업무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사실 또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것을 이유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가 발생한 기관·부서의 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등의 근로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④ 시장, 고충상담원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⑥ 시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⑧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 ⑨ 시와 소속 기관 내 스톱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조사결과와 보고 등) ① 업무담당부서과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고충상담원으로부터 통지 받은 즉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수시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내부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감사담당관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지부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2. 외부위원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2명 이상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시장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1조(조사 등 결과 통지) 시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징계)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시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신청인(대리인)		행위자		고충내용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 부서	성명	소속 부서				과장	국장 (소속기관의 장)



## 조사결과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1. 사안 개요

-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 2. 조사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 3.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여수시장